

의안번호	2218056
의 퇴 인	윤종오의원
회 답 일	2025.4.27.
추 계 번호	26B188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수준을 기능등급별로 산정하여 고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정노무비의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탁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4억 9,000만원(연평균 9,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적정노무비 산정 및 지급 등 (안 제22조의4 신설)	98	98	98	98	98	490	98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적정임금 산정 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결정되고, 추계하지 않은 재정수반요인의 비용이 포함될 경우 총재정소요액은 본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4 신설 (적정노무비 산정 및 지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노무비 수준(이하 “적정노무비”라 한다)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의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적정임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조사결과의 통계적 검증 등을 위하여 노·사·정이 참여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 지급의 기준과 대상, 적정노무비 산정 및 절차, 자료요청의 절차와 방법,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22조의5 (적정한 노무비의 지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제34조제9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적정노무비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제1항)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한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적정노무비가 현장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2조의4 신설 (적정노무비 산정 및 지급 등)	○	• (추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22조의5 (적정한 노무비의 지급)	×	• (미첨부3호)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적정노무비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한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적정노무비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능등급별로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 공공공사 건설계획, 공사별 투입되는 기능별 인력량과 적정노무비 단가, 공공공사별 투입 인력의 기능등급별 구성, 기존 노무비와 적정노무비간 차액, 향후 노무비 증가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수준을 기능등급별로 산정하여 고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의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탁하고, 적정노무비 산정방식의 적정성 및 조사결과의 통계적 검증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적정노무비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 위탁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불확정적이므로, 유사사례의 연구용역 사업비 및 국토교통부 내 유사 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비용을 추산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노무비의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탁하고, 적정임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및 조사결과의 통계적 검증 등을 위하여 노·사·정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안 제22조의4제1항은 적정노무비를 매년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연구사업 및 자문위원회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른 조사·연구 위탁비용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기관의 적정임금 관련 사업비 평균을 준용하여 8,000만원으로 가정함

[표 2] 적정임금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시기	금액
건설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및 적정임금 산출방안 연구 설문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2021	80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일자리위원회	2019	45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	일자리위원회	2018	44
건설업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18	30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2018	198
평균			80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및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자문위원회 운영비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 운영방식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 위원회 의평균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평균 위원수: 수당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수는 12인으로 가정(유사사례 평균)
- 개최일 수: 유사 위원회의 2025년 평균 개최횟수 연 5회로 가정
- 회의참석수당 단가: 민간위원 회의당 참석수당은 1인당 30만원¹⁾을 적용함

[표 3] 국토교통부 소관 유사 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명, 회)

위원회명	내용	민간위원수 (총위원수)	연간회의횟수 (2025)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 조정	10(14)	6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감정평가 기준, 수수료, 징계 등 심의·의결	10(13)	8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전문적 판단 및 기준 심의	14(20)	7
철도산업위원회	철도산업 정책 및 계획 심의·조정	12(24)	2
항공정책위원회	항공정책 중요사항 심의·의결	13(20)	2
평균		11.8	5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위원회 현황(2025.12.)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이상의 가정에 따라 적정노무비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 위탁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4] 연구용역 위탁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적정임금의 산정 조사연구 위탁	80	80	80	80	80	400
자문위원회 운영	18	18	18	18	18	90
합계	98	98	98	98	98	490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적정노무비 산정 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결정되고, 추계하지 않은 재정수반요인의 비용이 포함될 경우 총재정소요액은 본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1) 1인당 회의참석수당 20만원, 유인물비 등 안전검토비 10만원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적정노무비 산정 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결정되고, 추계하지 않은 재정수반요인의 비용이 포함될 경우 총재정소요액은 본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